### JIPYONG LLC NEWSLETTER 법무법인(유) 지평 | 노동 뉴스레터



2019년 8월 제25호

#### ■ 최신 법령 ■

#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### 1. 제안 이유

- 가.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「고용보험법」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낮은 현실에 대응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%에서 60%로,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므로 최저임금의 90%에서 80%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. 동시에,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외국보다 짧으므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나.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며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다.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의 예외적 거부사유로 규정하였던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, 본 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'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'을 삭제하였습니다.
- 라. 더불어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,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.

## JIPYONG LLC NEWSLETTER 법무법인(유) 지평 | 노동 뉴스레터

2019년 8월 제25호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,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(현행 제16조 삭제, 안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항 신설).
- 나. 고용안정·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(안 제35조 제3항 신설).
- 다.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 개월로 연장(완화)하였습니다(안 제40조 제2항).
- 라.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(평균임금의 50% → 60%)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%에서 80%로 조정하였습니다(안 제46조 및 제69조의5).
- 마. 실업급여 지급기간(소정급여 일수)을 30일 연장하여 90~240일에서 120~270일로 개선하 였습니다(안 제50조 제1항 별표1, 제69조의6 별표2).
- 바.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(안 제61조 제5항).
- 사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(안 제70조 제1항).
- 아. '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'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(안 제73조의2 제1항).

# JIPYONG LLC NEWSLETTER 법무법인(유) 지평 | 노동 뉴스레터

2019년 8월 제25호

- 자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75조)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안 제76조제1항).
- 3. 다운로드: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국회 본회의 가결안(현재 정부 이송)